

제조물책임법 이행 이후 화재조사 제도의 변화

경기지방경찰청 문 용 수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밀바탕이 된 국민은 과거에는 국가라는 절대 권력에 희생자로서 생활했던 시대가 있었으며, 그 후 기업에 의해 생산적 근로자로 지배를 받아왔던 산업화 초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과 생산적 종사자가 아닌 국가의 주체, 소비의 주체인 국민과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부각되는 시대이며, 국가와 기업이 국민과 소비자의 생각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신을 받거나 도태되는 시점에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정책 등이 우선이며,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도 이제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활을 건 최대의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대책으로 제조물책임 예방(Prevention, PLP)과 사고 발생 후 제조물책임 방어(Defense, PLD) 계획을 시행하고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¹⁾ 있는 등 기업은 소비자에 의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경제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정치 입법까지 지배하는 국민과 소비자의 시대이다.

그러면 제조물을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인 소비자와 화재조사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화재는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내 방화를 포함한 화재의 발생원인과 확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제조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과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활 속에 항상 존재하는 화재 사고는 정체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 예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대표 기관인 경찰과 소방의 활동이 피해자, 민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의문점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 주고 있으며, 공개된 결과에 대한 소비자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입증책임²⁾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및 보충을 위한 감정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설 감정 조사 기관의 등장이 필요한 것이며, 사설 감정 기관의 등장에 앞서 이에 대한 제도적 체계의 뒷받침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를 원하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은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그리고 화재 사건 당사자로서의 대표할 권리 를 영유하고 싶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사회적 지지를 얻어 2000년 1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동법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화재와 연관된 제조물책임법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 및 입증대책의 미

1) “제조물책임(PL)길라잡이”, 기업은행, 2002.

2) 사고가 발생한 제조물의 결함과 그 피해에 대한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

비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 750조을 제한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피해 배상측면에서 대비되는 면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작 단계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자리 를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화재조사 관련 국가기관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화재조사에 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알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화재 민원에 대한 혁신적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민간 부분의 화재감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화재원인 및 확산요인을 찾는 조사활동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대조적인 피해 배상범위와 화재조사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관련법 조항 해설, 화재조사의 특성,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화재사건 판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발전적 대안을 결과로 제시코자 한다.

제2장 관련법 조항 해설

1.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소비자주의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도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가 1996년 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¹⁾에 가입함으로서 국제화 시대의 한 흐름을 타기 시작하였으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에 리콜(Recall)²⁾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제도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 시행치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국제적 주변 정세가 변화하였으며, 국내 기업 또한 대외적은 경쟁력이 약화된 시점에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부각되었다³⁾.

(표 1) 각국의 제조물책임 제도 제정 현황

순번	국가	제도 명칭	시행 년도
1	미국	모델 제조물책임법	1978
2	영국	소비자보호법	1988
3	덴마크	제조물책임법	1989
4	독일	제조물책임에관한법률	1990
5	벨기에	결합제조물책임법	1991
6	호주	사업행위법	1992
7	필리핀	소비자보호법	1992
8	중국	중국제품품질법	1993
9	스페인	결합제조물에관한손해책임법률	1994
10	일본	제조물책임법	1995
11	프랑스	결합제조물에의한손해책임법률 제389호	1998
12	한국	제조물책임법	2002

그리하여 1998년 7월 학계, 법조계, 기업, 소비자,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법 제정 실무회의가 구성되면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고, 공청회를 통한 조정과 논의를 거쳐 1999년 7월 13일 제조물책임법안이 입법예고 되고, 동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 중에 1999년 11월 5일 추미애 의원 등 91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안과는 별도로 제조물책임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입법 예고되었던 정부안은 철회되고,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 12월 16일 제208호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공포된 후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국내 본격 시행 중에 있다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

1)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 캐나다를 준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19개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여 개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

2) Recall이란 회사(제조사)측에서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임.

3) 김운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1997, p.17. 인용

4) 권오승 외4, “제조물책임법”, 법무사, 2003, p.28. 인용

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말한다.⁷⁾

(2) 제조물책임법 조문 소개 및 법리해석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1.12 법률 제0610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전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리해석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전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의 시행 후 제조사의 안전의식 등 향상을 통한 제조물의 국제 경쟁력 확보 또한 부수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고, 현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우선 결함제조물을 직접 사용한 소비자를 들 수 있고,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의 피해자로는 사업자, 근로자, 보행자 등도 포함된다.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법리해석

제조물은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을 제외한 동산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되는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일부로 제조 또는 가공된 제조생산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품의 경우도 신품을 구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는 제조물에서 제외된 이유는 분쟁 발생시 계약책임, 하자담보책임(9) 보증책임(10) 등으로 제조물책임법 적용 없이 충분히 분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법리해석

결함이라 하면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 표시(지시, 경고)상의 결함(failure to warn or instruct)이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고 피해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상에 입증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며,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내

7) 정해준, "효과적인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인용

8)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p.24. 인용,

9)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하자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p.16. 인용,

10) 제품의 계약서, 설명서, 표시, 광고 등에서 일정한 약속을 하거나(명시의 보증), 그러한 보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경우에, 그 보증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지는 책임이다.

용에서 고의 또는 과실¹¹⁾을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 입증책임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결함¹²⁾을 입증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축소된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원칙¹³⁾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 법의 밑바탕이 된다.

(표 2) 결함의 분류 및 내용

결함	내 용
제조상의 결함 (manufacturing defect)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설계도면 대로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생산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결함이다
설계상의 결함 (design defect)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의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한 제품의 결함이다.
표시(지시, 경고)상의 결함 (failure to warn or instruct)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명, 지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결함이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 항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 항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법리해석

제조업자는 제조, 가공, 수입업자 또는 제조물에 일정한 표시를 한 자를 포함하나, 설치 업자, 운반 업자, 수리 업자 등이 단순하게 용역만을 제공하는 자는 제조물책임법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치 업자의 경우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설치를 통하여 새로운 제조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을 부담한다.¹⁴⁾

제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리해석

손해배상의 범위는 결함으로 인한 인과관계¹⁵⁾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나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¹⁶⁾이라는 증명의 의무가 존재하나,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¹⁷⁾

민법 제388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¹⁸⁾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11) 고의 또는 과실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임.

12)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를 입증하는 것보다 결함이라는 결과물을 입증하는 것이 입증책임이 원화된 것임.

13) 제조사(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제조사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관계가 있으면, 그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책임원리이다.

14)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p.51. 인용.

15) 인과관계 :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 존부의 인정은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권오승 외(2003)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p.62. 인용.

16) 입증책임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17)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p.55. 인용.

18)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매도인이 결함제조물을 공급한 것은 안전한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법리해석

제조업자에게 제4조와 같이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물을 공급 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결함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나, 제조업자와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만으로는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국가의 제조승인을 얻은 제조물이 결함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직무를 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¹⁹⁾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리해석

제조업자(완성품), 원료공급업자 또는 부품제조업자, 표시업자 등이 결함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리해석

소비자와 제조업자 간에 제조물책임법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제조업자간의 특약은 유효하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짐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09호,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2. 민법의 불법행위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리해석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19)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p.47. 인용.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내용이다. 불법행위의 요건으로는

-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③ 행위가 위법일 것
 - ④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
 - ⑤ 손해발생과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할 것 등
- 이다.²⁰⁾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리해석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내용 중에서 화재 피해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실화나,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화재의 경우는 연소 확산된 피해나 기타 타인의 손해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임.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로 연소 확산되어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후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제한이 없어 제조물책임법 관련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건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을 제한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피해의 범위에 대한 상반되는 법조항이 발견된다.

(표 3)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의 비교

구분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적용법 (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용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책임요건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중대한 과실	결합
손해배상 범위	모든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모든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치 않음	모든 손해배상

제3장 화재조사의 특성

제조물책임법 관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초기 상황이 최초 목격자에 의해 목격된 현장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구두진술, 진술서 및 진술조사 형식으로 보존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수 있지만 화재와 관련된 피해자, 관계자의 목격 진술은 원인규명에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목격자가 없는 완전히 전소된 현장의 경우도 남아 있는 잔해 조사만을 통하여 발화 부분 및 발화 원인을 규명 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화재 발생 후 발생 전의 수많은 특징점 등이 피해자, 관계자, 목격자로부터 제시되고, 이러한 특징점을 현장에 남아 있는 잔해를 통하여 흔적을 찾는 조사 활동만으로는 원인규명의 한계가 있으며, 어쩌면 이미 화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흔적이 완전 소실된 현장에서 그러한 사실 조차 모르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재현장은 피해자 등의 진술로 평소 전기누전으로 차단기가 자주 작동하였다던가, 기타 텔레비전 등 특정 제조물에서 타는 냄새가 감지되었다는 피해자의 화재증후의 진술만으로는 화재현장과 피해자 등이 주장하는 제조물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란 피해자(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 특성상 불로 인해 모든 것들이 소실된 상태에서 진화를 위한 소화약제 살포와 강한 주수(강한 압력의 소화수 살포)로 현장의 모든 것들이 위치 이동되고, 마지막으로 잔화 처리 과정에 중장비까지 동원된다면 일부 남아 있는 구조물까지 완전 붕괴 소실되어 현장은 화재 이전의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물리, 화학적으로 완전 변화된 모습으로 남는다.

이러한 변화된 현장에서 발화원인과 연소 확산요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조사기술이 필요하며, 밸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부분이 축소된 현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특성상 발화 부분 내에서 특정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원인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20)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p.17. 인용.

원인을 판단할 만한 증거 및 혼적을 발견할 확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국내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화재사건 입장현황(2001-2003)만을 참고로 추정한다면 3년 평균 발화원인 규명율이 약 17%내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경기지방경찰청 화재사건 입장현황²¹⁾

구분 년도	총 계 150건	발화원 규명(%)			발화원 불상 (%)
		방화	실화	기타	
2001	150건	23건(15.3%)			127건 (84.7%)
		9건	3건	11건	
		36건(13.0%)			140건
2002	176건	12건 (87.0%)			15건
		59건(24.3%)			184건 (75.7%)
2003	243건	25건	11건	23건	

그러나, 행정자치부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의 화재 구분을 전기, 유류, 가스, 난로, 아궁이, 담배, 성냥양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 중 현재 아궁이 같은 경우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난방 형태로 현재의 국내의 전반적인 수준을 반영한 분류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으며, 극히 발생 건수가 낮은 화공약품 화재의 경우 또한 급박한 보고 기일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단지 추정적인 원인조사의 형태이고, 첨부한 원인별 화재발생현황 표와 같이 화재원인이 불상 등으로 조사된 경우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이 4년간 평균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약26%를 차지하고 있어 반대로 해석하면 약 74%의 화재현장이 통계상으로는 발화원인이 규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 화재발생 현황 자체가 아직까지 화재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원인보고 기일이 소방 내부 규정으로 존재하며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화재 원인 분류 항목에 의한 통계치의 수집은 잘못된 소방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화재조사 선진국인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화재현장의 특성상 발화원인 및 확산요인 규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통계자료를 현실화하여 발화원인 및 확산원인이 규

(표 5) 원인별 화재발생현황²²⁾

구분 원인	2000		2001		2002		2003		2004(6월말)	
	건수	전년 대비 증감	건수	전년 대비 증감						
전기	11,795	550	12,300	505	11,202	1,098	10,670	532	5,470	66
유류	368	3	39	739	355	42	358	3	192	9
담배	4,305	49	4,445	140	3,847	598	3,316	531	2,149	313
불장난	1,695	139	1,371	325	1,187	184	1,274	87	899	128
난로	489	89	425	64	381	44	395	14	214	39
아궁이	676	4	668	8	618	50	572	46	445	136
양초성냥	288	45	292	4	258	34	266	8	172	33
불티	2,179	270	2,464	285	2,251	213	2,061	190	1,488	291
가스	1,590	175	1,479	111	1,170	309	981	189	375	116
화공약품	-	-	13	13	16	3	15	1	4	3
방화	2,559	125	2,709	150	2,778	69	3,219	441	1,761	63
기타	8,899	350	9,606	707	8,903	703	8,245	658	4,780	588
합계	34,844	988	36,169	1,325	32,966	3,203	31,372	1,594	17,949	1,319

명된 자료만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당연히 전체 화재 발생 건수와 통계자료 건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위주의 현장조사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화재원인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과감히 사설 화재조사 요원과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추세로, 프랑스의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민간단체인 보험협회 화재조사 요원이 국가조사관에 비해 기술적인 우위를 인정받고 화재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보고 위주의 화재조사와 각 기관의 업무 연관성의 입장에서 다소 편파적인 화재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이며, 피해자는 화재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법에 적용되는 민사 또는 형사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과 소비자,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송 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이외에 중요사건(살인, 강도 등)의 증거 인멸을 위한 화재와 최근 5년간 화재보험 손해율에서 나타난 화재보험사의 손해율의 증가는 보험금 관련 방화사건이 지속

21) “화재사건 접수대장”, 경기지방경찰청, 2001, 2002, 2003.

22)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2004, p70.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피해자 및 관계자에게 범죄 용의점이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 된다면 피해자, 관계자에게 사건 내용 및 현장 감식, 감정 내용을 어느 부분 까지 공개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화재조사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

(표 6) 최근 5년간 화재보험 손해율²³⁾

구분 연도별	계약건수	보험료	지급건수	보험금	손해율(%)
1999(99.4~00.3)	629,931	264,555	8,513	132,337	50.0
2000(00.4~01.3)	746,730	275,469	8,532	211,940	76.9
2001(01.4~02.3)	521,110	303,594	6,637	177,362	58.4
2002(02.4~03.3)	527,614	321,918	7,534	182,268	56.6
2003(03.4~04.3)	534,253	315,975	8,801	290,081	91.8

제4장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

1. 경찰화재조사

(1) 경찰화재조사의 목적

경찰의 화재조사의 목적은 방·설화 및 기타 범증 혐의 감별이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형법에 근거한 범죄로 화재현장을 조사 및 수사하여 원한, 치정, 금전 관련 방화의 혐의를 포착하거나, 실화 관련된 책임소재 및 화재와의 과실 개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기타 범죄로는 살인사건, 절도사건, 강도사건 등 의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사건 감별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2) 경찰화재조사의 문제점

경찰화재조사의 목적은 범증 혐의 포착과 범죄 증거 확보로, 피해자의 입장의 제조물책임법 관련 이해 관계의 민사 소송의 자료 확보라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 관련 증거 자료 확보와 경찰의 목적을 달리하는 부분이 같은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조사와 민사 증거자료 확보에 큰 관심이 없는 김영철, “한국의 화

재원인조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경찰 화재조사만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피해자 등이 원하는 민사소송 증거자료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경찰 조사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감정을 하는 행위가 통제되고 있어 피해자(소비자)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수사 기관인 경찰의 범증 혐의 포착이라는 목적 하에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조사된 경찰 조사 결과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화재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경찰청 자체가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대한 민원응대 서비스 정도는 다른 국가 기관의 전체적인 종합만족도가 63.3인 반면에 경찰청의 종합만족도는 52.0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⁴⁾

이러한 경찰청의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경찰의 전체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수치이지만 특히 화재사건에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고액의 이재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민원의 건수와 민원의 정도가 심한 편으로 전체 민원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더 낮은 수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방화재조사

(1) 소방화재조사의 목적

소방의 화재조사의 목적은 경계, 예방, 진압 등 소방 행정의 기초자료 확보이다.

소방에 근거한 소방화재조사는 피해조사와 원인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원인별, 인적 물적 피해별 분석 정리하여 화재 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행정 자료로 활용 한다.

(2) 소방화재조사의 문제점

소방 화재조사의 목적인 재 발생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는 화재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건을 예방하고, 소방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목

23)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2004, p71.

24) 아근주,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적이지만 소방 기관은 소방시설의 인가 및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이는 소방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빌화부분 규명이나 발화원인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으나, 연소 확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인가 및 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인 소방방재청이 화재로 인한 연소 확산 원인 규명이 시설 점검, 인가, 허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발생할 것으로, 시설 인허가권이 있는 소방기관과 화재 발생 후 시설에 대한 취약점이나 인, 허가권내 문제점에 대해 소방 화재조사는 확산요인을 적극적으로 조사 할 수 없는 화재조사권과 시설 인허가권 사이에 2중적 내부 갈등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이 방화범이 사회적 불만을 품고 유류로 방화한 사건은 빌화부분 및 발화원인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것이 아니고, 소방관련 대피시설, 초기 진화 시설, 배연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설 인허가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 소방법에 명시된 시설 등이 현실 적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으로, 소방 시설 관련 연소 확산 원인을 소방 기관에서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경찰 기관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는 민사 소송 목적과 차이가 있는 화재현장을 같이 공유하므로 소방 기관에 의해 피해자(소비자)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소방 기관의 재 발생 방지 자료 확보라는 목적 하에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3. 사설 화재감정

(1) 사설 화재감정의 목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법인이나 기타 형태로 사설 화재감정을 행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 조사반과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그리고 법인 손해사정업체가 일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사설 화재

조사가 아닌 보험과 연관된 방화 범죄 증거 확보가 목적이며, 확보된 증거는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의 형태로 민원을 접수하는 자료로 쓰이거나, 민사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이기 위한 목적이나, 사설 화재감정 기관이 앞으로 존재한다면 피해자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사설 화재감정의 문제점

보험사의 보험범죄조사반과 법인 손해사정업체의 화재현장 조사는 인적행위나 행적조사 등에 치중하는 면이 있어 보험가입자 등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아직까지 소비자와 피해자를 위한 사설 화재조사 및 감정기관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화재사건 피해자(소비자)로부터 그 필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설 화재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민간 교육 기관이나, 자격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제5장 화재사건 판례

1. 자동차 화재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35판결)¹⁹⁾

(1) 판시사항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²⁷⁾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4인)

피고, 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 담당변호사 이종결 외 1인)

(4)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5)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챕터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2. 4. 18. 박명동과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4 호3884호 코란도 훼밀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금액 금 15,500,000원, 보험기간 1992. 4. 18.부터 1993. 4. 18.)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1993. 4. 8. 21:40경 박명동의 아들 박노승이 서울 중구 신당2동 414의 12 소재 동명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를 주차시켜 두었는데 같은 날 23:50경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3. 6. 1. 박명동에게 보험금 1,54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1992. 11. 10. 피고 회사에서 출고되어 같은 달 13일 박명동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199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고 회사의 성동지점에서 2차에 걸쳐 그 엔진의 이상 징후에 관한 점검을 받았고, 1992년 12월 중순 피고 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접촉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좌측 훈다와 문짝을 수리 내지 교환하였으며, 그 이후 엔진에서의 소

음과 진동이 계속되어 1993. 3. 3. 위 정비공장에서 교류발전기를 지지·고정하는 주변의 기기와 에어컨 고압호스를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았고, 1993. 3. 24. 위 정비공장에서 배터리의 완전방전으로 교류발전기 등을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은 사실, 위 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서만 발생하였을 뿐 다른 곳에는 전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근에 특별히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물건이 없었으며 위 화재중 이 사건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사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30분전에 25~26세의 젊은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었으나 그들의 소행 또는 외부로부터의 화력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이미 출고 당시부터 동력전달장치인 엔진 부위에 비정상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의 화력이나 인화물질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리자인 박명동 등의 자의적인 행위나 실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위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부위 또는 이와 관련된 동력전달장치나 전기장치 등에 내재하여 있는 비정상적인 결함에 의하여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조상의 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제조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에 이름으로써 그 소유자인 박명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 제조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위 차량이 전소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음이 확인될 뿐이고 위 화재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어느 부위(부품)에서 발생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어디에 어떠한 결함

27)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 그 목적을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하자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존재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및 그 이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위 화재가 문이 잠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발생하고 화재 중 이 사건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사실을 중시하여 이 사건 차량 내부의 배선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를 감정하지 아니하여 화재의 원인은 물론 어디에서 발화하였는지 및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차량의 전기회로는 엔진점화용 전기회로와 이와 독립하여 차량 내부의 시계, 라디오수신기, 전조등과 실내등 등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로 대별되고 그 전원은 12V의 축전지인데, 후자의 전기회로에는 그 작동시 최대 9.95A(전조등)의 전류가 흐르고 모든 전원스위치를 끈 때에는 시계와 라디오수신기에 5-7mA의 적은 전류만이 흐르며, 그 배선에는 3중의 피복이 입혀진 0.5-1.5AVS 전선이 사용되고 정격전류값 10-15A의 휴즈가 설치된 사실, ③ 엔진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배선이 손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나 휴즈의 정격전류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교류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 그 배선에 전류가 흐를 여지가 없으며, 화재로 경음기의 배선이 용해되어 합선되는 경우에는 경음기가 울릴 수 있는 사실, ④ 위 박명동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인테리어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에는 통상 전기배선의 추가 내지 변경이 수반하는 사실, ⑤ 이 사건 차량은 각종의 전원스위치가 꺼지고 문이 잠긴 상태로 주차되었고, 소외 김제신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차량에서 나는 경음기 소리를 듣고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그 실내에 연기가 자욱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에서 약간의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밀폐된 운전석 부위에서 발화한 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인화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자욱할 정도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며, 따라서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내부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에 인접한 지하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낮선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

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이 매도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 2시간여 동안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기배선 등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²⁸⁾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대법원 판례인 자동차 화재 사건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와 제조사사이 민사 분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경우이지만 차량 화재와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피해자(보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

28)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 그 목적을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하자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사실이나, 입증자료 등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시내용으로 화재 당시 정확한 차량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 자체가 제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 조차하지 않은 사건이며,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30분전에 25~26세의 젊은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었으나 그들의 소행 또는 외부로부터의 화력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수사 기관에서 방화 관련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시 경찰의 화재조사 및 방화사건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며, 현장감식 자체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으며, 피해자(보험사) 또한 사전 증거 확보 및 검토가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조사기관 및 피해자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면, 우선 당시 조사기관인 경찰은 차량내 발화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었고, 차량을 감정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으며,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 사항이 미비한 화재사건 자체를 피해자의 입장(민사 소송 진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는 업무 진행의 결과이고, 피해자(보험사)는 구체적인 소송 대비 증거 자료도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무모함이 발견되고, 수사 기관이 차량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강 증거 확보 측면에서 차량을 사실 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소송 진행 대비 자료로 활용 하여야 하나, 오히려 차량의 발화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엔진 부위의 수리 경력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차량 화재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맥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판례 검토에 대한 문제점

- ① 수사기관의 화재조사에 대한 의지력 부족
- ② 소송 당사자의 차량 결합입증 조치 미비

2 텔레비전 화재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334판결)²⁹⁾

(1) 판시사항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

(2) 판결요지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 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29)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검색 판례 정보 인용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

(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4)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0. 13. 김옥자와 사이에, 김옥자 소유의 부산 영도구 신선동 2가 67의 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화재, 도난,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은 금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1994. 10. 13.부터 2004. 10. 13.까지로 약정하고 그 무렵 김옥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 김옥자의 딸인 김명희는 1996. 7. 3. 12:00경 이 사건 전물 내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한 16"비디오비전(V.T.R 겸용의 텔레비전, 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 사건 텔레비전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이 사건 텔레비전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어 급기야 위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한 사실, 위 사고는, 이 사건 텔레비전 수상관(일명, 브라운관) 내의 전자총 부분(고전압이

걸려 있음)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텔레비전은 피고 회사가 1988년 말경부터 1990년 초경까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모델명 SMV-1600), 김옥자는 화재 발생 약 6년 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 원고는 김옥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건물의 피해보험금으로 1996. 7. 24. 금 40,000,000원, 같은 해 8월 16일 금 16,531,282원 합계 금 56,531,28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전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텔레비전이 위와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텔레비전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전의 제조업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김옥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는 김옥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동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김옥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참조).

따라서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 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루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김옥자의 오사용 내지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하였고 그 내구연한을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전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질 뿐,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전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의 제조업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텔레비전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루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토

본 대법원 판결은 텔레비전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한 사건으로, 텔레비전내 결함의 원인까지는 입증하지 못한 사건이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후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입증 자체의 범위가 발화한 부분이 제조물까지만 축소할 수 있는 증거라면 제조물내 결함의 원인을 제조사가 입증해야하는 풀이로 해석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이 기본바탕이 된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편에서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한 판결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당시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에서 목격자가 외출한 상황으로 가옥 전체가 전소되어 발화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어떠한 해결 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화재로 인한 연소 확대로 주변가옥이나, 적접적인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 상황까지도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로 민법 750조를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는 피해자 각자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화재조사 특징에서와 같이 전체 화재사건 중에서 발화원인이 규명되는 것으로 17%정도로 나머지 83%의 화재 사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재에 관한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건의 경우 화재조사 기관의 목적과 관심도가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피해자의 입장과 같이 적극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소방의 화재조사만으로는 피해자는 모든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고, 모든 피해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앞으로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인 원인 규명 활동이 요구된다.

(7) 판례 검토에 대한 문제점

화재사건의 경찰, 소방 화재조사의 목적과 피해자의 제조물 책임법 관련 입장 차이에 대한 문제점 발생.

3. 원인불상 화재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구상금)³⁰⁾

(1) 판시사항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판결이유³¹⁾

피고가 임차한 음식점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최초 목격자가 화재발생 당시 건물 내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수사한 경찰도 화재는 누전으로 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고 및 건물주 역시 냉장고의 전선이 합선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는 등 이 화재는 그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를 비롯한 그의 사용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 불명이기는 하나, 피고 및 건물주가 냉장고의 전선이 합선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는 부분과 경찰 수사결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이 어떤 증거나 증후 등을 조사하거나, 정확한 감식 및 감정을 통한 해석으로 추정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누전 또는 합선 화재라면 감식결과나 감정결과가 발화원인으로 합선 또는 누전으로 쓰여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적어도 화재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지식이 있는 조사요원이라면 누전, 합선의 결과 보다는 원초적인 누전, 합선의 원인을 거론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고서에 “냉장고 전원선에 단락흔이 식별되며,

30)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검색 판례 정보 인용

31) 양삼모, “소방관련대법원판례집”, 도서출판 싸이렌, 2002, 인용.

단락의 원인은 전원선이 냉장고 다리 부분에 눌려 절연파복이 손상되어 출화한 흔적이 발견됨”이라는 정도의 원인이 전기 화재의 개연성을 추정하는 정도의 감식, 감정결과이다. 우리는 화재사고의 대부분을 누전과 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누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며, 합선 또한 화재의 별화원으로 추정하는 하나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의 단계인데 마치 “누전”과 “합선”이 전기 화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냉장고 전원선의 합선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합선에 의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정도로 소방, 경찰에서 보고서로 쓰진 못 할 것이다. 적어도 합선이라는 그 원인적인 형태의 분류로는 수십 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제조사와 소비자가 시비를 다투게 될 것이다.

(5)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

- ① 수사기관의 화재조사에 대한 의지력 부족
- ② 현장 감식 및 감정자의 전문성 부족
- ③ 피해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해 부족

제6장 개선방안

지금까지 다루어진 화재사건 판례와 사례를 통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하면

- 첫째, 화재조사를 하는 경찰 및 소방 기관의 화재조사에 대한 의지력 부족.
- 둘째, 현장감식 및 감정자의 전문성 부족.
- 셋째, 피해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해력 부족.
- 넷째,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당사자로서의 결함에 대한 입증 조치 미비.
- 다섯째, 경찰, 소방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과 피해자의 민사 소송 관련 입장의 차이 발생.
- 여섯째, 사설 감식, 감정기관의 필요성.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근무의욕 및 수사 의지력 확보차원의 개선 방안은 화재조사 업무를 근무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화재사건이 절도, 강도, 살인사건에 비해 방화범 및 실화범 겸거 짐수가 낮게 산정되어 있어 피해액이 고액인 화재사건에 비해 소액 도난 사건에 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화재 사건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범, 실화범 겸거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여 화재조사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소방 공무원은 화재사고 발생 후 진압과 동시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내부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정밀한 현장조사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여 화재현장 조사에 대한 근무의욕과 의지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장조사 요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기관별 시행 중인 화재조사 교육에 대한 통합 및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교육 추진으로,

소방 기관의 각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찰 기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전문화 교육, 수사보안연수소, 각 지방경찰학교의 화재조사 관련 교육을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협의하여 교육을 통합 시행하는 방안으로,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화재현장 조사 체계에 대한 통합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경찰, 소방 화재조사 요원의 인적 구성원 확보가 추가적인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양 기관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전문적인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는 난이도를 단계별 조정하여 획일적인 집단 교육보다는 각 요원의 전공에 맞는 전기전공, 기계전공, 화학전공 등의 맞춤식 학동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물책임법의 이해력 부족은 피해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조사에 임하는 경찰, 소방조사 요원이 제조물책임법과 화재관련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민사 관련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화재현장에서 조사요원의 민사 소송인 제조물책임법 관련 잘못된 언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치 못하는 결과나, 입증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민사 관련법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

요하고, 피해자가 제조물책임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각 PL 관련 컨설팅 업체 등에서 기업을 상태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되어온 것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홍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제조물책임법 관련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가 결함에 대한 입증 조치 미비에 관련 문제는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화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이 모든 민사 문제까지 책임을 지고 처리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경찰, 소방 조사가 끝난 화재 현장 및 반환된 증거물을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방안과 소송 당사자에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설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여 감정서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입증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경찰, 소방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과 피해자의 민사 소송 관련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대한 미비점은 우선 경찰,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방, 실화 및 범죄 수사에 연관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민사 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피해자는 경찰, 소방의 화재조사의 목적이 소송과 관련된 목적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유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사의 범위 내에서 증거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후 나머지 증거자료는 사설 감정을 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설 감식, 감정기관의 필요성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법 민사 소송이 증가할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과 민사 소송에서의 화재조사의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은 국내에서 화재 감식, 감정 업체가 필요한 이유로서, 국내에서도 민간 사설 화재감정업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과 경제적 소송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 상용화될 화재감식, 감정시장에 체계적인 대비책

을 마련코자 화재감식, 감정을 독립 학문으로 다루어지는 대학의 학부와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난립하는 화재감정 업체로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감정업에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설 시장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케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제7장 결론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문제점은 기준의 판례와 현장사례를 통한 검토와 방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화재조사 제도의 체계적인 국가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국가는 화재조사 제도 자체를 민원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에는 민사 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 그 한계에 대한 공백을 피해자가 보충 또는 반증하기 위해서는 자위적인 증거 확보 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부 기관의 대표적인 화재조사 기관인 경찰, 소방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증가된 민사 소송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으로 현재 국가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다.

인한 조사 기일의 단축과 조사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화재조사요원 또한 서로를 보완 협력함으로서 전문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 소방 화재조사 전문 요원은 교육 시점에서부터 통합 교육을 선행하여 양 기관의 인적 공감대를 형성 후 각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 조정과 분장을 충분히 협의 후 조사 제도 통합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비자, 민원인의 원하는 민간 사설 화재감정업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 화재 감정업의 체계적인 발전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제조물책임(PL)길라잡이”, 기업은행, 2002
- (2) 김은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1997
- (3) 권오승 외4, “제조물책임법”, 법무사, 2003
- (4) 정해준, “효과적인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5)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 (6) “화재사건 접수대장”, 경기지방경찰청, 2001, 2002, 2003
- (7)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2004
- (8) 김만건, “전기안전용어사전”, 성안당, 2000
- (9) NFPA 921,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Prentice Hall, 2002
- (10) “전기전자용어사전”, 탐구원, 2000
- (11) “화재수사길라잡이”,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4
- (12)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검색 판례 정보
- (13) 양삼모, “소방관련대법원판례집”, 도서출판싸이렌, 2002
- (14) “화재현장 조사결과4-190”, 경기지방경찰청, 2004
- (15) “화재조사 사진기록4-190”, 경기지방경찰청, 2004
- (16) 김영철, “한국의 화재원인조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7) “제조물책임법 제대로 알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2
- (18) 이근주,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